

일본의 난가안정 대책(Ⅱ)

임 덕 성

대한양계협회 사무국장

“
기금의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과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체결 및 손실보전금 교부와
이익금 수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출·처리한다.
”

이사장은 매사업년도 1회, 전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상총회를 소집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이 회원 총수의 1/2 이상 또는 총의결권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하는 사항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했을 때 감사는 민법에 정한 이외에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전항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위한 수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총회일 10일 전까지는 그 총회의 목적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외에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업무방법서의 변경

③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설정과 변경

④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처리안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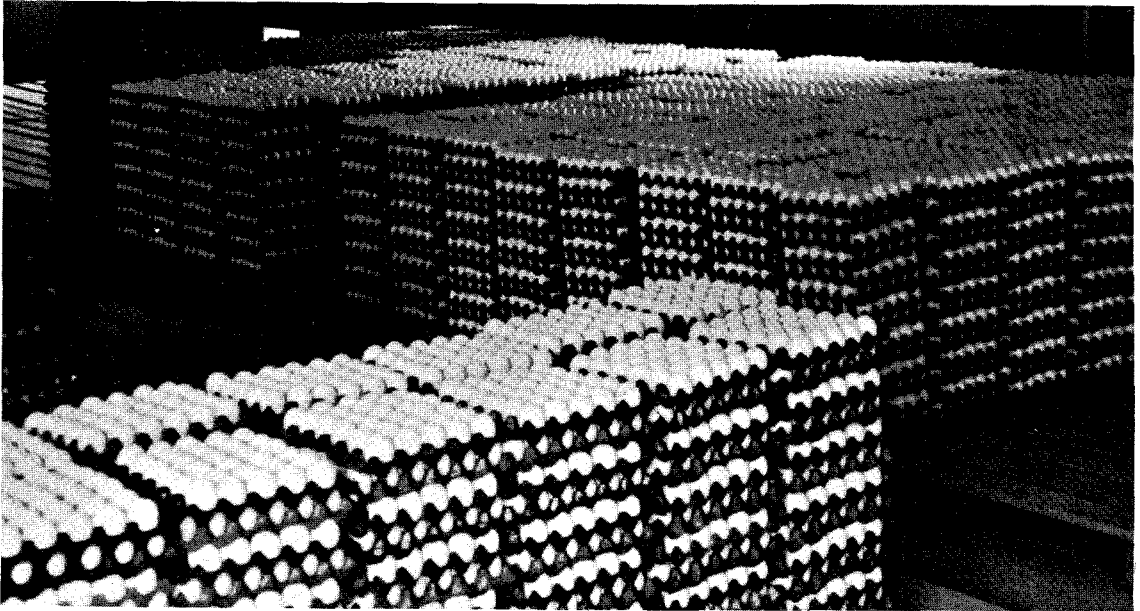
출자회원은 출자 1구좌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1출자회원의 의결권수가 의결권 총수의 1/5을 초과했을 때는 당해 출자회원의 의결권수는 의결권 총수의 1/5로 한다. 비출자회원은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는 회원 총수의 1/2 그리고 총의결권수의 1/2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

총회에 있어서는 총회개최일 10일 전에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정관의 변경, 기금의 해산, 회원의 제명사항을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총회의 의결은 정관의 변경, 기금의 해산, 회원의 제명사항을 제외한 의사에 관해서는 출석회원 의결권과



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의장은 출석회원 가운데서 선임한다.

다음 사항은 출석회원의 의결권 $\frac{2}{3}$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기금의 해산
- ③ 회원의 제명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해 서면으로 또는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코자 할 때는 그 서면이 총회개최일 전날까지 기금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및 총회에서 선출된 의사록 서명 2인 이상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① 총회일시 및 장소
- ② 회원의 현재수 및 총의결권수
- ③ 총회에 출석한 회원수 및 그 의결권수
- ④ 의안
- ⑤ 의사경과 개요 및 그 결과
- ⑥ 의사록 서명인의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외에는 다음에 계기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소집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③ 회계규정 등 기금의 제규정 설정 및 변경
- ④ 전 각호 사항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 총수의 $\frac{1}{3}$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이 제시되어 이사회 소집의 청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사의 경과개요 및 그 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총회에서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기금은 업무방법서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 ① 계란가격차액보전계약에 관한 것
- ② 보전적립금에 관한 것
- ③ 가격차액보전금교부에 관한 것
- ④ 계란의 보전기준가격에 관한 것

- ⑤ 계란의 표준거래가격에 관한 것
 - ⑥ 계란의 조정보관에 따른 손실보전 및 이익수납에 관한 것
 - ⑦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것
 - ⑧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금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 까지로 한다.

기금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① 출자금
- ② 전출한 회원의 회비
- ③ 보전적립금
- ④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수입이익금
- ⑤ 기부금
- ⑥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果實)
- ⑦ 기타 수입

기금의 자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보전준비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서 구성한다.

- ① 출자금
- ②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재산
- ③ 보전준비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재산을 기본재산에 전입한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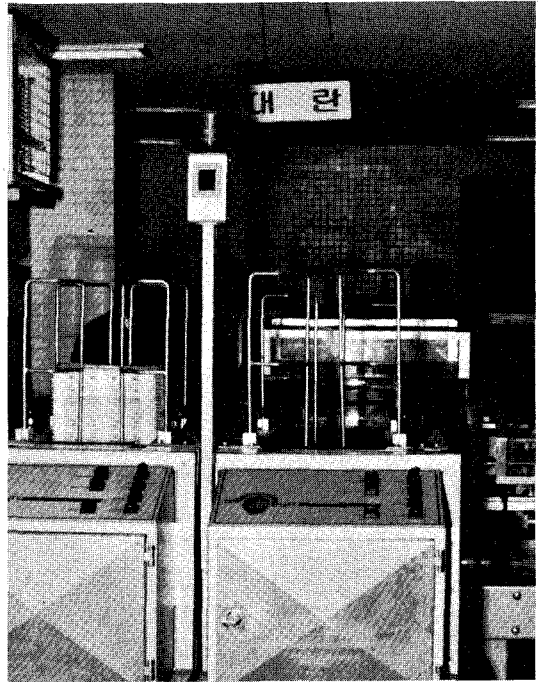
기본재산은 출자회원 탈퇴시의 반려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반려할 때 및 다른 방법이 없어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재산을 헐어서는 안된다.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에서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이월잉여금과 보전준비재산에 전입시킨 재산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구성한다.

- ① 축산진흥사업단의 회비
- ② 기부금
- ③ 기타 수입
- ④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⑤ 기본재산 과실에서 생기는 과실

보전준비재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서 구성한다.

- ① 보전적립금
- ② 계란의 조정 보관에 의한 수입이익금
- ③ 보전준비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재산



④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차입금 이자를 공제한 전입금

⑤ 전4호에서 생긴 과실

보전준비재산은 가격차액보전금, 손실보전금 및 비올반려금(返戻金)의 교부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헐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가격차액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교부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을 차입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헐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준비재산에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기금의 자산은 이사장이 이를 관리하고 그 방법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외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산 중에서 현금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방법에 의해 운용한다.

- ① 이사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농림중앙금고에 의 예금
- ② 국채, 지방채,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및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취득

기금의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과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체결 및 손실보전금 교부와 이익금 수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출·처리한다.

기금은 매사업년도 말에 있어서 보통재산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전부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단,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 차입금이 있을 때는 당해 사업년도의 이자(利子)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보전준비재산에 전입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금은 매사업년도 말에 있어서 보통재산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기금은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 및 이익수납 등에 따른 부대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사업년도 내에서 보통재산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의 차입은 가능하다. 단, 자금부족으로 인해 상환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해서는 이것을 차입, 대체할 수 있다.

기금은 가격차액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교부에 충당하기 위해 보전준비재산이 부족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리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매사업년도 개시 전에 이사장이 작성한다. 이사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지체 없이 다음에 계기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① 사업보고서
- ② 재산목록
- ③ 대차대조표
- ④ 수지계산서
- ⑤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처리안

이 정관의 변경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없이 시행할 수 없다. 기금은 민법이 정한 이외에 농협 및 조합원, 회원 전체가 지방 공공단체 및 축산진흥사업단출자회원으로 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단법인에 가입했을 때 해산할 수 있다.

기금이 해산했을 때 그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기본재산에서 출자회원에 대해 출자금을 반려하는 외에 총회 의결과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금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이를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영문]

사원 (간부·신입) 모집

“동물약품업계의 선두주자” 이것이 젊은 기업 한성약품의 목표입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부 문	해 당 학 과	인 원	응 시 자 격
영 업	수의학, 축산학 및 관련학과	각부문 간부: ○명 경력: ○명 신입: ○명	* 4년제대학 해당학과 졸업자 (89 졸업예정자 포함)로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개 발	수의학		
마케팅	수의학, 축산학 및 관련학과		
생 산	수의학, 약학, 화학		

- 2.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응시부문, 전화번호 기재)
나) 자기소개서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3.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 4. 제출기한: 1988년 9월20일까지
- 5. 제 출 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0 서진B/D 6층
(주) 한성약품 전화: 540-5470(대)

주식회사 **한성약품**